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7년 3월 9일 종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 개정이유

「도로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정액제 점용료 산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임.

II. 주요내용

- 가. 사설안내표지판을 도로점용 허가대상에 추가함 (안 제2조제1호).
- 나.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이상 점용하는 경우 변상금에 대하여 점용료 조정산식을 준용하도록 한 현행규정을 삭제함 (안 제6조제2항).
- 다. 증가산금 징수 적용대상을 채납액 30만원 이상에서 50만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함 (안 제8조제1항).
- 라. 법 제44조 제3호의 규정에서 정한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한 경우에는 감면을 제외하도록 단서를 신설함 (안 제9조제1항).
- 마. 1993년 이후 조정되지 아니한 정액제 점용료를 정률제 점용료와 형평에 맞게 조정하고, 재래시장 및 상점가의 주차장, 진입로, 비가리개 등의 점용료 100분의 80을 경감하도록 신설함 (안 별표 1).

Ⅲ. 검토의견

1. 조례 정비 배경

○ 도로법 및 동법 시행령이 2007. 1. 5 개정됨에 따라 법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점용료 산정기준은 별표 2의 점용료 산정기준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위법규에 제정권이 위임되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가 2006. 11. 20 개정·공포되었으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2006. 4. 28 전문개정되는 등 상위법령 및 조례에서 정한 내용에 부합되도록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세부 조항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2. 세부 조항별 검토의견

(1) 안 제6조제2항의 규정에서 “제1항의 규정은 변상금의 조정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라는 규정을 **삭제**한 것과 관련하여

2006. 1. 1 전문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제5항의 규정을 보면,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한 자에 대하여는 사용료 및 대부료의 조정은 이를 실시하지 아니한다”로 정하고 있어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2) 안 제8조 후단 “이 경우 가산금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종전 지방세법 준용규정을 국세징수법 준용규정으로 **변경**하려는 것과 관련하여

2005. 12. 30 개정된 「도로법」 제78조 제2항의 규정을 보면, 도로의 관리청은 제1항의 경우에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라고 개정되었는데 「국세징수법」 제21조에서 정한 가산금 및 동법 제22조의 증가산금을 가산하는데 있어 체납된 국세가 50만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증가산금 징수 적용대상을 종전에는 체납액 30만원 미만인 경우는 적용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체납액 50만원 미만인 때에는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상위법에 맞게 준용규정을 변경하려는 것으로서 결과적으로 증가산금 징수 적용 대상이 상향조정되는 것입니다.

(3) 안 제9조제1항 중 “다만, 법 제4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감면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단서를 신설한 것과 관련하여

먼저 「도로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3항의 규정을 보면, 점용료의 금액이 5천원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44조 제3호(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한 경우)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감면받는 경우를 제외한다”라고 2004. 7. 20 법 개정 시 단서가 추가로 신설되어 상위법에 맞게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4) 안 별표 1의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8호에서 정한 점용물의 종류에 따른 점용료 산정기준을 상향조정한 것과 관련하여

1993년 이후 현재까지 17년간 조정되지 않은 전주, 수도관 등에 대한 정액제 도로점용료를 현실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2007. 1. 5 개정 · 공포된 「도로법시행령」 제26의2 제1항을 보면, “법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는 별표 2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한다”라고 규정하였고, 또한 동조 제2항에 “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점용료 산정기준은 별표 2의 점용료 산정기준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제정권이 위임되어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세부 인상 · 인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공중전화는 동결된 반면에 전주, 지중배전용기기함, 주차측정기 등의 시설물은 종전 대비 1,250원이 증가된 37.3%가 상향조정되었고,

둘째, 수도관 ·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은 종전 대비 89,100원이 증가된 38.5%가 상향조정되었으며,

셋째, 광고탑, 광고판, 간판, 아치 등의 시설물은 종전 대비 162,600원이 증가된 38.0%가 상향조정된 반면, 돌출간판은 종전 대비 30,000원이 감소된 33.9%가 하향조정되었는데 그 감소사유는 다른 시설물에 비하여 점용료의 산정기준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시행령 개정 시 타 시설물과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하향조정된 것으로 봅니다.

참고로 2006년도 전주·공중전화 등 지상시설물 및 수도관·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에 대한 도로점용료 부과·징수액은 14억 6천만원이며, 앞으로 평균조정률 38.0% 적용 시 세수증대 효과는 있겠으나, 도로점용시설물 관리자 및 점용대상자에게 그만큼 부담이 늘어날 것이므로 일시에 적용하기 보다는 연차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부담을 다소 줄일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 볼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5) 안 별표 1의 비고 제11호에서 위 표 제7호에서 규정한 점용물 중 버스카드판매대·구두수선대 및 가로판매대는 점용료 산정총액이 연간 700,000원을 초과할 때에는 700,000원으로 한다. 라는 보도상 영업시설물 감면규정을 삭제한 것과 관련해서는 점용료 산정총액이 연간 700,000원을 초과할 경우에도 실제 점용면적에 따라 부과한다는 서울시 조례에 부합하도록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6) 안 별표 1의 비고 12호에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시장·시장활성화 구역 및 상점가의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점용료는 점용료의 80/100을 경감한다. 라는 규정을 신설한 것과 관련하여

먼저 2006. 10. 27 전문개정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 제2호의 규정을 보면, 법 제18조 및 제1항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 또는 점용료는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사용료 등의 80퍼센트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라고 제정권이 위임되었는 바, 서울시 및 타 자치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경감률을 동일하게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감규정은 한시규정이며, 부칙에서 유효기간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라고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IV. 관련법규

● 도로법

[일부개정 2007.1.26 법률 제8283호], 시행일2007.7.27.

第43條 (占用料의 徵收) ①管理廳은 第40條의 規定에 依하여 道路를 占用하는 者로부터 占用料를 徵收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占用料의 算定基準등 占用料의 徵收에 關하여 필요한 사항은 國道(第22條第2項의 規定이 적용되는 國道を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大統領令으로, 기타의 道路인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道路의 管理廳이 속하는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定한다.<改正 1993.3.10, 1999.2.8>

第44條 (占用料徵收의 制限) 第40條의 規定에 의한 道路의 占用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第43條의 規定에 의한 占用料를 減免할 수 있다.<改正 1993.3.10, 1999.2.8>

1. 公用 또는 公益을 目的으로 하는 非營利事業을 위한 경우
2. 災害 기타 特別한 事情으로 본래의 占用目的을 達成할 수 없는 경우
3. 國民經濟에 중대한 影響을 미치는 公益事業으로서 大統領令이 定하는 事業을 위한 경우
4. 住宅에 出入하기 위하여 通行路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營利目的이 아닌 경우

第78條 (負擔金등의 強制徵收) ①道路의 管理廳은 이 法 또는 이 法에 依하여 發하는 命令이나 條例 또는 처분으로 인하여 占用料 기타의 負擔金을 납부하여야 하는 者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부할 기간을 定하여 督促하여야 한다.

②道路의 管理廳은 第1項의 경우에 加算金을 徵收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징수법」 第21條 및 第22條의 規定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加算

금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개정 2005.12.30>

③道路의 管理廳은 占用料 기타의 負擔金 또는 加算金을 납부하여야 하는 者가 그 납부기한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 또는 地方稅 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할 수 있다.

●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7.1.5 대통령령 제19829호]

제26조의2 (점용료의 산정기준) ①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는 별표 2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1999.8.6>

②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점용료산정기준은 별표 2의 점용료산정기준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6조의4 (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연도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점용료보다 10퍼센트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3의 점용료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정 2005.8.4 법률 제7665호]

제81조 (변상금의 징수) ①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를 포함한 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재산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

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 을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1. 등기부 그 밖의 공부상의 명의인을 정당한 소유자로 믿고 상 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권리를 취득한 자(취득자의 상속인 과 그 포 괄승계인을 포함한다)의 재산이 취득 후에 공유재 산으로 판명되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해대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 정기간 공유재산을 점유하게 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 는 때 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체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 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 하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23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및 대부료의 조정은 이를 실 시하지 아 니한다.

● 지방세법

第27條 (加算金 및 督促) ①地方稅를 納期限까지 完納하지 아니한 때에는 納期限을 경과한 날로부터 滯納된 地方稅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 는 加算金을 徵收한다. 다만, 國家와 地方自治團體(地方自治團體組合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12.31>

②滯納된 地方稅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納期限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滯納된 地方稅의 1千分の 12에 상당하는 加算 金(이하 이 條에서 "重加算金"이라 한다)을 第1項에 規定하는 加算金에 加算하여 徵收한다. 이 경우 重加算金을 加算하여 徵收하는 기간은 60 月을 초과하지 못한다.<개정 1993.12.27>

③第1項의 경우에 있어서 稅務公務員은 納期限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銀行納인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納期限을 붙인 督促狀을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第26條의 規定에 의하여 納期전에 徵收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개정 1988.12.26, 1993.12.27>

④第2項의 規定은 第1項 但書에 해당하는 경우와 滯納된 地方稅가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개정 1988.12.26, 2000.12.29>

● 국세징수법

[일부개정 2006.10.27 법률 제8055호]

第21條 (加算金) 國稅를 納付期限까지 完納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納付期限이 경과한 날로부터 滯納된 國稅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加算金을 徵收한다. 다만, 國家와 地方自治團體(地方自治團體組合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3.12.19, 2003.12.30>

第22條 (重加算金) ①滯納된 國稅를 納付하지 아니한 때에는 納付期限이 경과한 날로부터 每 1월이 경과할 때마다 滯納된 國稅의 1千分の 12에 상당하는 加算金(이하 이 條에서 "重加算金"이라 한다)을 第21條에 規定하는 加算金에 加算하여 徵收한다. 이 경우 重加算金을 加算하여 徵收하는 기간은 60월을 초과하지 못한다.<改正 1993.12.31>

②第1項의 規定은 滯納된 國稅가 50만원미만인 때에는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③第21條 但書의 規定은 第1項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 2006.4.28 법률 제7945호]<한시법:2016.12.31>

제18조 (국·공유지 사용료등 감면) ①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시장활

성화구역 및 상점가에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동시설(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인 경우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시설한 것에 한한다)을 「국유재산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도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 및 「하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이하 "국·공유지"라 한다)에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설치한 경우 그 사용료·대부료 또는 점용료(이하 이 조에서 "사용료등"이라 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면할 수 있다.

1.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사용료등 :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감면율
2. 도로 및 하천의 사용료등 : 「도로법」 및 「하천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감면율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공유지의 사용료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시설은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주차장, 진입로 및 통행로, 화장실, 고객지원센터 등 고객편의를 위한 시설
2. 비 가리개, 공동창고 및 물류센터, 상인교육시설 및 제65조의 규정에 따른 상인회 사무실 등 상인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

●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전부개정 2006.10.27 대통령령 제19720호]<한시법:2016.12.31>

제7조 (국·공유지 사용료등의 감면)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 또는 점용료(이하 이 조에서 "사용료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감면율에 따라 감면한다.

1. 국유재산의 사용료등 : 「국유재산법」에 따른 사용료등의 80퍼센트
2. 공유재산의 사용료등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사용료등

의 80퍼센트 범위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
부칙 <제19720호, 2006.10.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이 영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 (국·공유지 사용료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등) ①제7조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용료등부터 적용한다.

1. 국유재산 :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사용료등
2. 공유재산 : 이 영에 따라 감면율을 정하는 조례의 제·개정 후 최초로
부과하는 사용료등

②제7조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의 사용료등의 감면에 관한 조례는 특별
한 사유가 없는 한 이 영 시행일부터 4월 이내에 제정 또는 개정하여야
한다.